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44,481,755	31,334,453
일반회계	829,298,773	24,878,963
특별회계	215,182,982	6,455,489
공기업특별회계	150,950,437	4,528,513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7,535,949	1,726,078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93,414,488	2,802,435
기타특별회계	64,232,545	1,926,97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387,847	131,635
수질개선특별회계	74,559	2,237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1,319,059	39,57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특별회계	187,530	5,626
주택사업특별회계	2,189,770	65,693
농공단지특별회계	3,519,716	105,591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63,676	1,91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824,034	114,721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46,704	1,40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5,565,186	466,956
도시개발특별회계	33,054,464	991,634

제 2 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9,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705,083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최종 추경예산 확정 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가 있는 경우 시의회의 협의를 얻어 간주처리할 수 있다.